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24일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24일
- 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26일 (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사회진흥과장 이효선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 체육기금을 운용코자 조정.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
- 기금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8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996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하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조성 총 20억원을 조성코자 함.
- 기금을 은행에 예치한 후 이자 수익금을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
- 기금을 시민체육 보급,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, 시민의 체육진흥사업 등으로 사용

다. 법적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현재 일부 체육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와 관리상태는?	• 현재 1억 6천만원이 있으며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음.
• 체육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하였다고 한 경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대략 얼마정도로 예상되는지?	• 현행 금리율 적용할 경우 연간 2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.
• 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 내용을 제출바람.	• 서류로 제출하겠음.
• 93년도의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내역은?	•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93년도의 경우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음.
• 기금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은?	• 시행에 따른 세부시행 규칙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여야 함으로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을 규칙에 제정하도록 하겠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부천시의 낙후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함.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부천시의 체육진흥기금으로 8년 간에 걸쳐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부천시 전체 교육비 예산과 비교할 때 균형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됨.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216
의 결	93. 12. 6
년 월 일	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26

제 출 자 : 총 무 위 원 회

1.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기금의 운용사항을 시장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면 되어 있으나 검토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안제4조 ⑤항 중 '시장은 제출된 기금운용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'를 →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를 삽입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수	정	안
제4조(기금의 사용)		제4조(기금의 사용)		
①항 - ④항 조례안과 같음.		①항 - ④항 조례안과 같음.		
⑤항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		⑤항 시장은		
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.		면밀히 검토하고 <u>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</u> .		
		<u>다.</u>		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부천시체육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운용 관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조성) ① 기금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 간 부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10억원, 1997년부터 2001년까지 10억원을 출연한다. 년 출연금은 년도별로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 년 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확보하여 체육회장에게 출연한다.

제3조(기금의 운용, 관리) ①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한다.

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③ 기금은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입금을 부천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금으로 운용한다.

④ 체육회장은 적립원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따른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.

제4조 (기금의 사용)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
② 기금에 의한 이자 수입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, 개발 및 보급사업
2.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
3.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체육회장이 지정하는 사업

③ 체육회장은 매회년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또한 기금운영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.

④ 체육회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2월말까지 전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제출된 기금의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운용관)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체육회장은 소속직원 중 기금 출납직원을 따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94.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93년 11월 24일

나. 제안자 : 부 천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93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93년 11월 26일 (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회계회장 원태희)

가. 제안이유

○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 신축 및 처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원미구 역곡1동사무소 신축

-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5-2
- 면 적 : 991.4㎡(300평)
- 건축규모 : 지하1층 및 지상2층
- 건축연면적 : 990㎡(300평)
- 예산액 : 690,000천원
- 신축사유

현 청사는 역곡역 전철선로와 10M 인접하여 전철소음으로 민원인과 대화나 전화통화가 어려운 실정이며, 95.완공 예정인 경인전철 북복선 계획으로 동사무소와의 거리가 5M